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재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776

발의연월일: 2024. 9. 6.

발 의 자:이재관·이병진·소병훈

복기왕 • 박용갑 • 오세희

송재봉 • 박홍배 • 유준병

강준현 · 고민정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, 공무원은 원천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게 됨.

한편,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「정당법 일부 개정법률안」 등을 마련하고 있음. 이에 따르면, 해당 공무원은 이 법에 따라 후원회의 회원이 되거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게 됨.

다만,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자신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지역을 관할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의 회원이 되거나 해당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1항, 같은 조 제6항 신설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3777호), 「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774호), 「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77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자신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지역을 관할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의 회원이 되거나 해당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없다.

제46조제2호 중 "누설한 자"를 "누설한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중 자신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지역을 관할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한 자"로 한다.

제51조제3항제3호 중 "제8조(후원회의 회원)제1항"을 "제8조(후원회의 회원)제1항 또는 같은 조 제6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벌칙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

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후원회의 회원) ① ~ ⑤	제8조(후원회의 회원) ① ~ ⑤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⑥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
	공무원은 자신이 거주하거나
	근무하는 지역을 관할로 하고
	있는 국회의원후원회 및 지방
	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의
	회원이 되거나 해당 후원회에
	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.
제46조(각종 제한규정위반죄) 다	제46조(각종 제한규정위반죄)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
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	
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	
한다.	-,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8조(후원회의 회원)제3항	2
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명부	
의 열람을 강요한 자 또는 같	
은 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	
여 회원명부에 관하여 직무상	
알게 된 사실을 <u>누설한 자</u>	<u>누설한 자 또</u>
	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
	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

3.	\sim	7	(생	략)
U.		ι.	\ O	-

- 제51조(과태료) ① · ② (생략)
 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 - 1. 2. (생략)
 - 3. 제8조(후원회의 회원)제1항의 구정을 위반하여 후원회의회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한자

4. ~ 9. (생략)

④ (생 략)

무원	중	자신이	거	주히	-거	나
근무	하는	지역을	관힐	<u></u> 로	하	<u>고</u>
있는	국회	의원후	원회	및	지	방
사치	단체	장후보기	자등-	후원	회	ㅡ 에
		기부한			•	<u> </u>

3. ~ 7. (현행과 같음)

제51조(과태료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(3)	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4. ~ 9. (현행과 같음)
- ④ (현행과 같음)